

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
◇ 제·개정 이유

- 특허협력조약 규칙(Regulations under the PCT) 제16.1(d)조, 제57조에 의거,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새롭게 조정한 원화 금액의 국제조사료 및 취급료를 알리기 위한 것임

◇ 주요내용

- 조사료
 - 오스트리아 특허청: (현행) 2,495,000원 → (개정) 2,422,000원
 - 호주 특허청: (현행) 1,869,000원 → (개정) 1,829,000원
 - 일본 특허청: (현행) 783,000원 → (개정) 767,000원
 - 싱가포르 특허청: (현행) 1,955,000원 → (개정) 1,906,000원
- 취급료
 - (현행) 255,000원 → (개정) 253,000원